

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1월 2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

● 법률 제20077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보호하기”를 “보존·관리하거나 정비하기”로 한다.

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 중 “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화유산”을 “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·도지사가 시·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실시”를 “실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화재, 재난”을 “화재, 풍수해, 재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훈련을”을 “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)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,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5조제4항 중 “30일”을 “30일(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1항 단서 중 “전시”를 “전시, 조사·연구”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)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,

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,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·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외전시”를 “국외전시, 조사·연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”을 “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,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, 조사·연구”로 한다.

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) ①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 및 국·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1.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
 2.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
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, 제39조제1항,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,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,

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·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·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